

4 학생생활상담소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상담소는 호서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상담소는 학생들의 생활 전반에 걸친 제반문제의 지도, 상담 및 연구와 학생, 직원, 교원(시간강사 포함)이 관련된 성 관련 고충 상담 및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 15)

제3조 (활동부서) 본 상담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담부, 연구부 및 성 평등 상담부를 둔다. (개정 2010. 9. 15)

1. 상담부 : 개인상담 및 집단지도와 이에 필요한 각종 검사를 실시한다.
2. 연구부 : 학생지도, 상담을 위한 연구활동을 하며 이에 관련된 연구결과를 간행 한다.
3. 성 평등 상담부 :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 규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10. 9. 15)

제3조의 2 (운영위원회) 상담소 운영 및 상담활동 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0. 9. 15)

1. 위원장은 상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운영위원은 소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2. 운영위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3.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구 성

제4조 (소장 및 직원) 본 상담소는 다음과 같이 소장 및 직원을 둔다.

1. 소 장 : 1명
2. 카운셀러 : 약간명
3. 연 구 원 : 약간명
4. 조 교 : 약간명
5. 사 무 원 : 약간명
6. 성 고충 상담원 : 약간명 (신설 2010. 9. 15)

제5조 (자격 및 임무) 소장 및 직원의 자격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소 장
 - 가.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상담소 업무 전반을 통괄한다.
 - 나. 소장은 본 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보하며 총장이 이를 임명한다.
 - 다.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2. 카운셀러

- 가. 카운셀러는 학생의 제반 상담에 응한다.
 나. 카운셀러는 대학원 석사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 9. 15)
3. 연구원
 가. 연구원은 학생지도 상담을 위한 제반 연구활동에 종사한다.
 나. 연구원은 대학원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4. 조 교
 가. 조교는 학생지도 상담 및 제반 연구활동을 보조한다.
 나. 조교는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이를 임명한다.
5. 사 무 원
 가. 사무원은 상담소 업무 전반에 따른 실무에 종사한다.
 나. 사무원은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로서 총장이 임명한다.
6. 성 고충 상담원 (신설 2010. 9. 15)
 가. 성 고충 상담원은 성 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와 제10조에 명시된 업무를 담당한다.
 나. 성 고충 상담원은 대학원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제 3 장 재 정

제6조 (재정) 본 상담소의 재정은 다음으로 충당한다.

1. 본 대학교 보조금
2. 자율적 경비
3. 사회유지의 찬조금
4. 기타 수입

제7조 (회계연도) 본 상담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와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198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